

## 〈 보건복지부 자체 평가기준 〉

### ○ 기본 원칙

-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, 유망중소기업\*,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, 산학연계 활성화 기업, 강소기업에 우선 선정 또는 높은 배점 부여
- \* 나노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체, 벤처기업 등

### ○ 등급 기준

-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20등급 (1~20등급)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
-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

### ○ 선정 제외

가.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
- 1) 「근로기준법」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- 2) 「병역법」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- 3) 업체요청 (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)

나. 근로자가 사망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7조제1항(제3호 나목은 제외)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
\* 제3호나목 :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
다.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

라. 재단법인 또는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

- 마.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7조제1항 (제3호나목은 제외)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
- \* 제3호나목 :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- 바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(「고용노동부」 누리집 확인)
- 사. 「국세징수법」 제114조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·상습체납 업체 (「국세청」, 「관세청」, 「행정안전부 위택스」 누리집 확인)
- 아.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 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
- \* '22. 1. 1.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
- 자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
- 차.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\* (주·부업종 모두 포함)
- \* 가상자산사업자 :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, 교환, 이전, 보관·관리, 중개·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(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2조제1호하목)
-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가능
- \*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: '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(63999-1), 일반 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 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주점업(56219)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, 무도장 운영업(91291)' 에 해당하는 업체(기초연구법 시행령 [별표 1])

○ 세부 기준(우리부)

평가 기준	배점	제출 서류
<p>1)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3년 중 1개년도의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10%(화장품은 5%)이상인 기업</li> <li>※수출비중이 20%(화장품은 10%)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 차등 부여</li> <li>①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출비중이 20%이상~30%미만인 경우</li> <li>· 수출비중이 30%이상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② 화장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출비중이 10%이상~15%미만인 경우</li> <li>· 수출비중이 15%이상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10%(식품 및 화장품은 5%)미만인 경우 : 최근 3년간 수출액이 매년 상승하거나 국내·외 수출관련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</li> </ul>	<p>20</p> <p>5 추가 10 추가</p> <p>5 추가 10 추가</p> <p>5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출비중 계산서 ([양식7] 참조)</li> <li>- 수출비중 계산서 또는 박람회 등 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
<p>2) 유망중소기업(해당항목 누계 적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첨단과학기술(Biotechnology, Nanotechnology)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체</li> <li>- 기업경영이나 기술이 양호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할 경우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발굴기관(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, 금융기관, 시·도, 출연연구기관)에서 선정한 중소기업</li> <li>-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상승한 중소기업</li> <li>-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</li> </ul>	<p>10</p> <p>10</p> <p>10</p> <p>10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단체장 확인자료</li> <li>- 유망중소기업선정서 또는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사본</li> <li>-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사본</li> <li>-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</li> </ul>
<p>3) 법인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</p>	<p>10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4년 5월분 법인전체 임금대장(국민연금납부증명서·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로 대체 가능) 사본</li> </ul>
<p>4) 기술지도 우수기업(각호의 1 해당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최근 2개년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2%이상인 기업</li> <li>나. 정부 및 출연기관의 첨단기술(제품)개발사업 수행기업</li> <li>다. 신물질 등 특허출원기업 또는 신기술인증기업(NET, NEP 마크 표시업체), 기타 실용신안 특허등록 기업</li> <li>라. 최근 3년 이내 산업기술인협회장, 언론기관장,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장으로부터 신기술, 신제품 등으로 수상경력이 있는 업체</li> <li>마. 부설연구소 등록업소</li> <li>※ 최근 2개년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3%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 차등 부여</li> <li>- 3%이상~ 5% 미만인 경우</li> <li>- 5%이상(바이오 분야의 경우 3%이상)인 경우</li> </ul>	<p>10</p> <p>5 추가 10 추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계산서 ([양식8] 참조)</li> <li>- 용역계약서사본</li> <li>- 특허출원(등록) 사본 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</li> <li>- 표창장 및 상장 사본</li> <li>- 부설연구소등록증 사본</li> <li>-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계산서 ([양식8] 참조)</li> </ul>

평가기준	배점	제출서류
<b>5) 지방소재기업</b> - 지정신청사업장이 수도권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 ※ 군 또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은 가점 부여	5 5 추가	- 공장등록증 사본
<b>6) 품질관리 우수기업</b> 가. 의약품의 경우 KGMP, BGMP 인증업체 나. 식품·의료기기의 경우 KS표시허가업체, ISO9000 이상 인증업체, HACCP인증업체 다. 화장품의 경우 CGMP인증업체 또는 ISO9000 이상 인증업체	5	- 인증서 사본
<b>7) 근로환경 우수기업</b> -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보호, 안정적 인력 지원,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유도하는 우수기업 (예시) · 비정규직 → 정규직 전환 ·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· 복지·역량 증진 * 가족친화인증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, (청년)내일채움 공제가입기업 · 산업안전 우수 인증기업 *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(안전보건공단), 위험성 평가인정사업장(안전보건공단), 클린사업장(안전보건공단), 근무혁신 기업,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	10	- 관련내용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<b>8) 산학연계 협약업체</b> 가. 산학연계 특성화고 3자 협약업체 나. 산학연계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다. 산학연계 중소기업기술사관 협약업체 라. 유니테크(Uni-Tech)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마.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바.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(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업체 포함)	20	- 취업협약서
<b>9) 기타사항(각호의 1 해당)</b> 가. 동원업체로 지정된 기업 나. 여성대표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다. 수출지원대상지정업체, 수출유망중소기업, 수출기업화대상업체 또는 세계일류상품생산인증기업 라. 산업단지(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, 수출자유지역 등)입주기업, 외국인전용단지 입주기업 마.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기업	5 5 추가	- 지정서 사본 -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- 선정서 등 내용확인서류 사본 - 공장등록증 사본 - 채용시 자격소지자 가점규정 또는 자격수당 지급규정

※ 별도 가점은 추천기준별 배점과는 별도로 부여

※ 동일점수 경합시 평가기준 중 상위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. 세부점수 내역도 동일한 경우 지정업체 종업원 수 적은 업체 및 매출액이 높은 업체 우선

○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

① 각종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제출하고,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로부터의 유효기간을 유망중소기업선정서 5년, 이노비즈기업확인서 3년, 벤처기업 확인서 2년,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2년 인정

② 평가기준 2) 관련

- 첨단과학기술(Biotechnology, Nanotechnology)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체 증빙서류
  - 업체 나름대로 첨단바이오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. 관련단체장이 확인한 자료이어야 함
    - 예) BT·NT 관련 특허, 연구투자내역서 또는 연구실적 등
- 유망중소기업 관련 : 우수제품, Family 기업인증, 회원인증은 인정하지 않음

③ 평가기준 4) 관련

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점 인정하므로 서류 간소화를 위해 해당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만 증빙서류 제출 요망
- 신물질 등 특허출원기업 또는 신기술인증기업(NET, NEP 마크 표시업체), 기타 실용신안 특허등록 기업 인정 관련
  - 의장등록증, 상품등록증은 신기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음. 신물질, 신기술로 인한 특허, 실용신안 등만 인정

④ 평가기준 5) 관련

- 수도권지역 범위(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과밀억제권역)

제9조 (권역의 범위) 법 제6조에 다른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.  
[별표1]

과밀억제권역
1. 서울특별시 2. 인천광역시[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(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] 3. 의정부시 4. 구리시 5.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데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 6. 하남시 7. 고양시 8. 수원시, 9. 성남시 10. 안양시 11. 부천시 12. 광명시 13. 과천시 14. 의왕시 15. 군포시 16. 시흥시[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]



## 【양식6】

### 병역지정업체 평가서

(○○○협회)

#### 1. 기업명 및 전화번호

기업명	전화번호	업체구분(○표시)	
	( ) -	신규	기 지정

#### 2. 평가내용

세부 평가 기준(신규 및 기 지정)	점 수	해 당 항 목
1)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※ 별도 가점 부여 가능		
2) 유망중소기업		
3) 법인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		
4) 기술지도 우수기업 ※ 별도 가점 부여 가능		
5) 지방소재기업(수도권 제외) ※ 별도 가점 부여 가능		
6) 품질관리 우수기업		
7) 근로환경 우수기업		
8) 산학연계 협약업체		
9) 기타사항		
점 수 합 계		

**[양식7]**

(1면)

수출비중 계산서

(업 체 명)

	매출액(A)	수출액(B)	수출비중(B/A)
연도	백만원	백만원	%
연도	백만원	백만원	%
연도	백만원	백만원	%

우리 업체의 수출비중 계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업 체 장

인

※ 기재방법

1. 점수 인정받을 수 있는 년도의 매출액,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기재
2. 수출비중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

※ 첨부서류

1. 매출액 증빙서류 : 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
2. 수출액 증빙서류 : 무역협회·주거래은행 등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또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'자사수출입실적증명' 등

<참고사항>

- 가급적 월별 총액 및 연간 총액이 원단위로 기재된 "수출실적명세서" 제출
- 수출매출액이 기재된 손익계산서로 증빙하는 경우, 그 내용을 표시
- 수출신고필증, 외화획득용원료(물품)구매승인(신청)서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(발급)신청서는 가급적 제출을 삼가하고, 동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경우에는 2면의 수출액 총람표 작성
- 부가가치세신고서 불인정



